

근대 동아시아 역사학에서 ‘종주권’ 개념의 형성

김종학*

20세기 초 중국 청화학파(淸華學派)의
외교사 연구를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전근대 동아시아사의 핵심 술어이자 역사학 개념인 ‘종주권’(宗主權)의 기원을 1920-30년대 장팅푸(蔣廷黻, 1895-1965)를 중심으로 한 청화학파(淸華學派)의 외교사 연구에서 찾는다. ‘宗主權’은 동아시아 3국의 역사학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온 용어지만, 실제로는 러일전쟁 전후 일본 언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유행한 근대의 산물이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중국과 일본 언론에서 통용된 ‘종주권’의 의미를 전통적 유형과 현대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 변화를 분석했다. ‘종주권’은 국가 간, 그리고 주권 간 불평등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으며, 따라서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이 완전히 소멸하자 일본 언론에서는 대한(對韓) 종주권 담론이 사라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의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역사적 ‘종주권’을 운위하기 시작했다.

장팅푸와 청화학파의 역사학은 어떤 의미에서 당시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던 ‘종주권’의 의미를 통합하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다. 그 방식은 현대적 유형의 의미를 수용하되, 역사적 논거를 동원하여 이를 초역사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장팅푸 자신이 사료 편찬의 원칙으로 강조한 신뢰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을 뿐 아니라, 20세기 초 국제정치의 산물인 ‘종주권’ 개념을 역사서술에 도입함으로써 한중 간 위계 구조를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대 동아시아의 ‘종주권’ 개념은 하위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순차적인 ‘종주권’ 주장은 국가 간 관계를 가축적 위계로 인식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국제질서관(國際秩序觀)과 함께 그에 대한 두 제국의 뿌리 깊은 비하 의식을 드러낸다.

주제어 장팅푸(蔣廷黻), 청화학파(淸華學派), 종주권(宗主權), 종주국(宗主國), 외교사학

* 본 연구는 2024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초 청화학파(淸華學派)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종주권’(宗主權)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 역사학계에서 근대 한중관계사의 핵심 술어로 정착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청화학파는 중국 근대 외교사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¹ 장팅푸(蔣廷黻, 1895-1965)와 그가 양성한 연구자 그룹을 말한다. 장팅푸는 1929년부터 1935년까지 청화대(淸華大) 역사학계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유학을 통해 습득한 신사학(New History)의 문제의식과 당시 유럽에서도 신생 학문이었던 외교사학의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른바 과학적 역사 연구를 선도했으며, 그 결과 청화대는 중국 근대사 및 외교사 연구의 중심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비록 장팅푸는 장제스(蔣介石)의 부름을 받아 일찍 학계를 떠났지만, 1952년 원계조정(院系調整, 대학 학부·학과 개편)으로 중국 근대사 연구의 중심이 베이징대로 옮겨진 뒤에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거점 세 곳—중국의 베이징대, 타이완의 중앙연구원, 미국의 하버드대—을 모두 그의 제자(邵循正, 郭廷以, John K. Fairbank)들이 이끌었을 정도로 그 학맥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²

이 글에서 동아시아 역사학의 문제적 개념인 ‘종주권’의 학문적 기원을³

1 朱傳譽(1979), 『蔣廷黻傳記資料』, 台北: 天一出版社, 第1卷, p. 55.

2 刘超(2013), 「清华学人与中国近代史研究-从罗家伦、蒋廷黻到郭廷以、邵循正、费正清」, 『江蘇社會科學』 第4期; 曾维君·王素华(2016), “蒋廷黻对清华大学历史系专业改革之贡献”, 『邵阳学院学报』 第1期.

3 오늘날 ‘宗主權’ 개념은 역사학·국제법학·국제정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1880년대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러일전쟁(1904-05)을 전후해 널리 퍼진 근대의 산물이었다. 김중학(2023), 「‘宗主權’이라는 말의 국제정치적 기원에 관하여: 1890년대 말 일본에서의 번역 경위와 동아시아로의 전파」, 『국제정치논총』 제63집 4호; 김중학(2024), 「근대 일본에서의 ‘종주권’ 개념의 발명-1880년대 후반 조청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개념적 전유」, 『개념과 소통』 제34호.

청화학파에서 찾는 것은, 비단 이들이 중국의 근대외교사 연구를 창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학문적 영향은 당대에 이미 일본까지 파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기 근대 한일관계사 분야의 초석을 놓은 역사학자로서 엄밀한 실증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잘 알려진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897-1945)의 주저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近代日鮮關係の研究)(1940)의 경우, '종주권'은 19세기 동아시아의 공식 문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말인데도 이를 도처에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서언」과 「인용서목」(引用書目)에 의하면, 장팅푸·샤오원정·왕신중(王信忠) 등 청화학파의 연구를 크게 참고한 사실이 확인된다.⁴ 그렇다면 중일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중국의 청화학파가 만들어낸 '종주권' 역사 담론을 일본의 역사학자 다보하시가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그것이 양국 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버리는 하나의 지적 회로(回路)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다보하시가 청화학파의 연구를 인용하지 않은 『근대일지선관계의 연구』(近代日支關係の研究)(1930)에서는 '종주권', '종주국'(宗主國) 등의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은 그러한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⁵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세기 초 '종주권'(또는 'suzerainty')이 두 가지 의미 유형으로 통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의미의 분화가 발생한 역사적 경위를 서술한다. 단, 이 글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전통적 유형'과 '현대적 유형'으로 구분했지만, 근현대 국제관계에서 '종주권' 개념의 본질은 다의성(polysemy)과 모호성(ambiguity), 그리

4 “장팅푸 씨의 『근대중국외교사자료집요』(近代中國外交史料輯要), 왕원성 씨의 『60년래 중국과 일본』(六十年來中國與日本)이 공간된 것은, 애석하게도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 최근 국립 청화대학을 중심으로 샤오원정 씨와 왕신중 씨 등 청년 학도들이 청불사변, 일청전역(日淸戰役)에 관한 좋은 저서를 발표한 것은 종래 구미 역사가들의 편협한 견지에서 논한 옛 청 시대의 국제정치사를 시정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보하시 기요시 저, 김종학 역(2013),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상), 「서언」, 서울: 일조각, p. 35.

5 田保橋潔(1930), 『近代日支關係の研究-天津條約より日支開戦に至る』, 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研究調査冊子 第3輯, 京城: 京城帝国大学.

고 자의성(arbitrariness)에 있었다.⁶ 제3장에서는 20세기 초 중·일 양국의 언론에서 ‘중주권’의 두 가지 의미 유형이 어떻게 혼재되어 유통되고 있었는지 검토한다. 이는 청화학과의 역사학 연구가 등장할 당시 ‘중주권’의 언어적 맥락(linguistic context)을 이해하는 한편, 그것이 역사서술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의미상의 변화를 음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범위는 현실적 여건상 중국의 경우 『근대중한관계사자료회편』(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과⁷ 「전국보간색인」(全國報刊索引, CNKY) DB,⁸ 일본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서 제공하는 「아사히 크로스서치」 DB로⁹ 한정했는데, 비록 모든 용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에서는 청화학파에 의해 ‘중주권’이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 특히 한중관계사를 서술하는 역사 용어로 전유(專有)된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장팅푸의 ‘중주권’ 개념은 당대 제국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그의 현실적 인식과 맞물려 실제로는 ‘현대적 유형’의 의미에 가까웠으며, 이에 따라 한중관계의 사상(史象)에 관한 일정한 왜곡을 초래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중주권’이 근대 이후에 나타난 개념이라는 사실에 주

-
- 6 Yuan Yi Zhu(2020), “Suzerainty, Semi-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egal Hierarchies on China’s Borderlands”,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No. 10.
- 7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은 1987년 대만 중앙연구원의 장춘우(張存武), 자오중푸(趙中孚)와 정치대학 역사학과의 후춘휘(胡春惠)가 19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중국의 신문·잡지·문집·외교 당안·총서 등에서 한중관계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총 12책, 700여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이다. 이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曾天富(2021), 「대만의 한국학 연구 상황과 미래 전망」, 『한국학연구』 제61집, pp. 343-346 참조.
- 8 「全國報刊索引」은 중국 최초의 중국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1833년부터 1911년까지 발행된 302개의 정기간행물, 1911년부터 1949년 사이에 발행된 약 2만 5천여 종의 정기간행물, 그리고 상하이에서 영국의 *North-China Daily News & Herald* (字林洋行)에서 발행한 중문과 영문 신문의 원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 9 『아사히신문』은 1879년 1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무라이마 료헤(村山龍平)에 의해 『오사카 아사히』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다. 이후 1888년에 별도의 『도쿄 아사히』가 창간되었으며, 1940년부터 현재의 『아사히신문』으로 통일했다. 『아사히 크로스서치(<https://xsearch.asahi.com/>)』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사의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목하여, 이를 중국이 가진 실제적 권리로 전제하기보다는 그 개념적 형성 과정과 현실 정치에서의 작동 양상을 국제법¹⁰·개념사¹¹·학술사,¹² 그리고 비교사의 관점에서¹³ 새로 검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 분석 시기는 대부분 19세기 후반에 그치는데, 이는 서구 국제정치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suzerainty' 개념이 사실상 현실적 의미를 상실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동아시아의 '종주권'은 고유한 생명력을 가진 개념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종주권'의 두 가지 의미 유형

1911년 간행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제11판)의 'suzerainty' 항목에 따르면, 이 말은 본래 중세 유럽에서 충성 서약(the oath of fealty)으로 맺어진 영주(lord)와 그 봉신(vassals) 간의 특수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19세기 이후 평등하지 않은 국가 간 관계를 묘사하는 데까지 그 의미가 확장됐다. 즉, 그 어원과 무관하게 다른 나라에 일정하게 예속된 국가를

-
- 10 '종주권' 개념을 19세기 서구 국제법의 '반주권국' 이론과 관련시키고, 이로부터 조공국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분석하는 연구로, 유바다(2016a),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8호; 유바다(2016b), 「조약·장정의 체결과 속국(屬國)·반주지국(半主之國)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역사와 현실』 제99호; 유바다(2017),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의 발발과 조선의 속국(屬國) 지위 청산」, 『대동문화연구』 제98호 등이 있다.
- 11 이동욱(2019a),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사총』 제96호; 이동욱(2019b) 「1880-1890년대 동서양 종주권 개념의 변용과 착증: 영국과 청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157호; 이동욱(2021), 「1880-1890년대 동서양 종주권 개념의 변용과 착증: 영국과 청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57집.
- 12 손성욱(2023a); 손성욱(2023b), 「20세기 '중번관계'론의 형성과 변용」, 『동양사학연구』 제164호.
- 1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편, 『아세아연구』 제67권 1호(2023) 참조.

‘vassal states’로, 그 상위국가를 ‘suzerain’이라고 부른 것이다. 특히 ‘vassal state’는 한때 오토만 제국의 일부였으며 여전히 그것과 느슨하게 연결된 특정 국가들—이집트·불가리아·루마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의 종속적 지위를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¹⁴ 곧이어 이 개념은 청 제국과 조선·베트남·류큐 등 조공국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까지 적용됐다.¹⁵

그런데 이 개념은 점차 오토만 제국과 그 속령, 청 제국과 그 조공국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중층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이러한 의미의 불확정성 (indefiniteness)으로 인해 이 개념이 국제정치에서 더욱 선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에 이르러 이 용어[suzerainty]는 강대국과 종속국 간에 존재하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모호한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불확정성이야말로 이 용어가 채택되는 이유다.¹⁶

20세기 초 국제정치 및 국제법학계에서 ‘suzerainty’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오토만이나 청 제국 등 동양의 전통적 제국이 그 속령에 대해 본유(本有)한 것으로 여겨진 상징적이며 보편적인 권위이다. 두 번째 의미는 서구 열강이나 일본 같은 근대적 제국이 조약 또는 실력을 통해 그 피보호국·식민지·위성국에 대해 차지한 우월한 지위를 묘사하는 것이었다.¹⁷ 이 글에서는 ‘suzerainty’의 두 가지 개

14 Hugh Chisholm (Ed.), *Encyclopaedia Britannica(1910-1911)*, 11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26, s.v. “suzerainty,” pp. 173-174.

15 岡本隆司(2014), 「宗主權と國際法と翻譯:「東方問題」から「朝鮮問題」へ」, 『宗主權の世界史: 東西アジアの近代と翻譯概念』(岡本隆司 編),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16 *Encyclopaedia Britannica(1910-1911)*, p. 174.

17 이미 1880년대 중반 저명한 러시아 국제법학자 마르텐스(Friedrich Fromhold Martens)는 “한 국가의 우월권이 반(半)주권적 정부의 상위에서 행사되는 제한적 주권(La

념 유형을 편의상 '전통적 유형'(제1유형)과 '현대적 유형'(제2유형)으로 구분한다.

전통적 유형의 'suzerainty'는 서구 열강이 오토만 및 청 제국 등 비서구의 전통적 제국 질서를 해체하고 자신의 세력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잔존시킨 명목상의 권위를 의미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suzerain (state)'로는 오토만 및 청과 같은 동양의 전통적 제국, 그리고 그 'vassal (state)'로는 몰다비아·왈라키아·이집트·세르비아 등 속령과 조선·베트남·류큐 등 조공국이 분류되었다. 또한 이들 국가는 '현대적 유형'의 'vassal state'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 독립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은 다시 근대적 제국의 피보호국·식민지·위성국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대적 유형은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의 근대적 제국이 비서구의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갖는 우월하고 배타적인 지위(paramountcy, supremacy)를 말한다. 이 관계에 있는 국가로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토후국(princely states),¹⁸ 프랑스 제2제정과 아프리카의 부족국가,¹⁹ 일본제국과 대한제국 등이 있었다. 특히 전통적 유형의

souveraineté limitée exercée par le pouvoir suprême d'un état sur un gouvernement mi-souverain”이라는 정의를 제시한 바 있었다[F. F. de Martens (1883-1887),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traduit du russe par Alfred Léo Sabatier*, 3 vols., Paris: Chevalier-Marescq et Cie, vol.1, p. 333의 각주 1]. 하지만 이 같은 의미를 확산시킨 결정적 계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트란스발 공화국)에 대한 대영제국의 국가실행과 그로 인해 발발한 제2차 보어전쟁(1899-1902)이었다[James W. Garner(1928), *Political Science and Govern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p. 255].

- 18 1891년 8월 영국령 인도 정부의 판보는 토후국에 대해 영국이 갖는 'suzerainty'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제법의 원칙은 한편으로 여왕-여황제를 대표하는 인도 정부, 다른 한편으로 여왕 폐하의 suzerainty 아래에 있는 토후국 간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의 지배적 우월성(paramount supremacy)은 후자의 종속을 전제하며 함축한다.” John Westlake (1914), *Collected Paper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L. Oppenheim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0-221.
- 19 豊田哲也(2018), “國際法における保護關係(protectorate)概念の形成と展開”, 『ノモス』43,

[표 1] 'suzerainty'의 두 가지 개념 유형

	전통적 유형(제1유형)	현대적 유형(제2유형)
의미	명목상의 권위	우월·배타적 지위, 사실상의 지배
주권의 통제	사실상 방임	실질적 통제
학계와 언론에서의 유행 시점	19세기 말	20세기 초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호관계(protectorate)와의 구분	구분	혼용
상위국가[suzerain]	동양의 전통적 제국(오토만·청 등)	근대적 제국(영국·프랑스·일본 등)
하위국가[vassal]	몰다비아·왈라키아·세르비아·이집트·키프로스·카타르 등 발칸 속령(오토만), 조선·베트남·류큐 등 조공국(청)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토후국·아프리카의 부족국가·대한 제국

'suzerainty'가 국제법상 '보호 관계'(protectorate)와 엄격하게 구분된 것과 달리, 20세기 이후 유행한 현대적 유형에서는 오직 우월하고 배타적인 지위의 의미가 강조된 탓에 혼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1]은 지금까지 설명한 전통적 유형과 현대적 유형의 차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통적 유형과 현대적 유형을 막론하고, 'suzerainty' 개념으로 표상되는 국제관계의 핵심은 상위국가에 의한 하위국가의 주권, 특히 대외적 주권의 통제에 있었다. 다만 그 주권을 어디까지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은 어떠한 일관된 규범도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오직 제국 간의 정치적 흥정과 국제사회의 승인에 따라 정해졌는데, 문제는 이들 국가도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suzerainty' 문제를 다루는 근대적 제국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태도는 제2차 보어전쟁 당시 영국의 식민장관 조셉 체임벌린(Joseph Chamberlain)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자국의 'suzerainty'에 관해,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5년 뒤 인도 총독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 1st Marquess Curzon of Kedleston)이 티베트에 대한 청 제국의 'suzerainty'에 관해 한 발언을 비교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은 우월성(supremacy), 우위성(predominance), 탁월성(preponderance), 또는 최고권(paramountcy)이다. - 당신이 어떤 단어를 택하든 상관없다. 어느 표현을 쓰든, 나는 그 단어가 쇠 단추(brass button)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라고 불러도 좋다. 단, 그 실질은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이다. (...) 'suzerainty'는 트란스발 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지위를 표현한다.²⁰

우리는 중국이 티베트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suzerainty'를 정체상의 허구(a constitutional fiction) - 쌍방의 편의 때문에 유지되어 온 정치적 의태(a political affectation)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이른바 'suzerainty'라는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티베트에 주둔하는 중국의 총 병력은 형편없이 무장한 500명도 안 되는 병사들에 불과하다.²¹

'종주권'이라는 신어(新語)가 동아시아의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한 계기는 러일전쟁의 승리 및 제2차 한일외정서(을사조약, 1905. 11.

20 Great Britain, Parliament (1899), *The Parliamentary Debates* (authorised edition) Fourth Series, Vol. LXXVII, London: Wyman and Sons, pp. 277-278.

21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1904), *Papers Relating to Tibet. Presented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Cd. 1920*, London: HMSO, pp. 154 - 155.

17.)의 체결로 일제가 대한제국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획득한 데 있었다. 즉, 당시 언론에 의해 일제와 대한제국 간의 정치적·국제법적 상하관계를 표상(表象)하는 대중 언설의 형태로 유행한 것이다.²² 이러한 발생론적 배경은 이후 ‘종주권’이라는 개념에 지우기 어려운 의미상 각인을 새겨 놓았다. 또한 그것은 당시 서구 국제법학계에서 ‘suzerainty’의 의미가 전통적 유형에서 현대적 유형으로 점차 이행하던 추세와도 맞물려 있었다. 이로 인해 20세기 초 ‘종주권’이라는 말이 처음 인구에 회자될 때의 의미는, 19세기 오토만이나 청 제국의 명목적이며 상징적인 권위가 아닌, 제국주의적 국제질서의 적나라한 권력정치적 뉘앙스를 물씬 함축한 것에 가까웠다.

3. 20세기 초 중국과 일본 언론에서의 ‘종주권’

3.1. 『아사히신문』의 용례

「아사히신문 크로스서치」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1879년부터 1950년까지 ‘종주권’ 또는 ‘종주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총 112건으로, 그 중 1904년 이전의 것은 단 6건에 지나지 않는다.²³ 그리고 1922년부터 1930년까지 9년간, 그리고 1940년 이후 기사는 검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3개 시기(제1기: 1904-1910, 제2기: 1911-1922, 제3기: 1931-1939)로 나눠서 ‘종주

22 김중학(2023).

23 첫 번째 기사는 『오사카 아사히』 1883년 11월 28일 자에 나온다. “청국 정부는 각국 정부(프랑스 정부 등)에게 고백서(告白書)를 발송했다. 그 서면에는 먼저 청국이 안남국의 위에 가지는 종주의 권(淸國が安南國の上に有する宗主の權)을 재론하고 (…)”. 이어서 「南阿事件の成行(一)」(『도쿄 아사히』 1899. 9. 29.), 「蒙古に於ける露國の野心」(1902. 4. 12.), 「英國と暹羅との誓約」(1903. 3. 3.), 「露國半官報の日露衝突論」(1903. 9. 12.), 「佛暹新條約」(1904. 4. 6.) 등의 기사가 검색된다. 단, 마지막 기사는 러일전쟁 개전 이후의 것이지만, 내용상 러일전쟁과는 무관하다.

[표 2] 『아사히신문』의 '종주권'·'종주국' 용례(1904-1939)

상위국가	하위국가	제1기 (1904-10)	제2기 (1911-22)	제3기 1931-39)
중국	몽골, 티베트	3	33	3
	조선	2		
	산둥성, 야프-상해		3	
	만주국			3
타이	케다, 트렝가누	1		
러시아	폴란드		1	
오토만	불가리아·보스니아·크레타·알바니아·이집트·사이프로스·아르메니아·스미루나	3	10	1
	일반적 의미	1	2	
일본	한국	29		
	중국, 아시아	1	3	
영국	아일랜드			1
	일반적 의미		1	
이탈리아	푸메		1	
	에티오피아			4
독일	보헤미아, 모라비아			1
총		40	53	13

권'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면, 주로 제1기와 제2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제1기의 기사 총 40건 가운데 72.5%에 해당하는 29건이 일제와 대한제국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아래 인용하는 1905년 8월 16일자 기사는 그 한 가지 예로, 포츠머스 강화회담에서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종주권'을 승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위무당국에서 '종주권'의 획득을 논의한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²⁴ 한

— www.kci.go.kr
 24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第37·38卷 別冊「日露戦争 V」, 東京: 外務省, p. 60.

국 문제를 다룬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제2조 또한 오직 우월한 정치·군사·경제적 이익(paramoun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al interests)만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는 의역에 해당했다.

페테르부르크발 로이터(路透) 전보에 따르면, “당국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가장 사정에 정통한 방면에서 전하는 말에 따르면, 러시아 황제는 공공연히 강화를 승낙할 조건을 심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미 이를 확정했다. 그 조건은 즉 조선에서의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요동을 일본에 할양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방하며, 동청철도를 중립화하여 열국 공동경영 아래 두고 하얼빈 이남의 만주를 청국에 반환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²⁵

‘종주권’을 언급한 기사는 제2차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계기로 더욱 증가했다. 19세기 고전 국제법에서는 온전한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타국의 통제를 받는 국가를 반주권국(半主權國, *États mi-souverains*)으로 분류하고, 그에 속하는 국가 유형으로 봉신국(vassal state), 피보호국(protected state), 연방의 구성국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언론은 이와 같은 정치(精緻)한 학문적 분류를 따르기보다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상위에서 통제하는 ‘우월한 주권’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용어로 ‘종주권’을 사용하는 편을 선호했다. 덧붙여 말하면, ‘종주권’은 서구 국제법의 ‘suzerainty’ 개념의 번역어로 처음 출현했고, 따라서 그 의미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동아시아의 언어적 또는 관습적 맥락에서 ‘종주’(宗主)라는 말이 갖는 고유한 뉘앙스로 인해 종종 그것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의미도 내포했다.

— www.kci.go.kr

25 『媾和特報』, 『東京朝日新聞(號外)』(1905. 8. 16.).

본래 보호정치는 극도로 어려운 정치이다. 주권(主權)을 제한하고, 이로써 종주권(宗主權)을 행한다. (...) 통감부 창건 이래 우리 보호정치의 최급무는, 새롭게 성립된 우리 종주권을 한국의 내외에 확고히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외부의 관계 열국의 승인은 일러전쟁 중에 이미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전쟁 결국(結局)에서 또 그 뒤에 러시아의 최후 승인도 명실상부하게 얻었다. (...) 한국에서의 군신상하의 마음으로부터의 승인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 요컨대 한국 내부에서는 우리 종주권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²⁶

그런데 [표 2]에서 보듯이,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종주권'을 운위하는 기사는 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소멸하면서 '종주권' 개념이 함축하는 양국 간 '주권'의 위계 또한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2기에는 제1기와 대조적으로 전통적 유형의 '종주권'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주제는 주로 몽골 및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총 53건 중 33건, 62.2%)과 오토만 제국의 '종주권'(10건, 18.8%)이었다. 전자의 경우, 당시 외몽골 및 티베트의 국제적 지위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영국 간에 외교협상이 벌어진 것과 관계가 있었다.²⁷ 중국은 1913년 외몽골의 지위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맺은 협약에서 그 자치를 허용하는 대신 '종주권'(suzerainty)을 인정받았다.²⁸ 또한 이듬해 중국·영국·티베트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라(Simla)회의에서도

26 「統監府の政績」, 『東京朝日新聞』(1908. 7. 25.).

27 배경한(2000), 「19세기말 20세기초 중화체제의 위기와 중국 민족주의: 티베트·몽골의 독립 요구와 중국의 대응」, 『역사비평』제51호; 손성욱(2023a); 岡本隆司(2016), 『中国の誕生: 東アジアの近代外交と国家形成』,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第12·13章; 馮明珠(1996), 『近代中英西藏交渉與川藏邊情: 從廓爾喀之役到華盛頓會議』,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8 John V. A. MacMurray (ed.) (1921), *Treaties and agreements with and China, 1894-1919*, New York: Oxford Univ. Press, Vol. 2, pp. 1066-1067.

티베트의 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타협안이 제출되기도 했다.²⁹

러시아와 영국이 중국에 주고자 했던 외몽골과 티베트의 ‘중주권’은 전형적으로 전통적 유형에 해당했고, 따라서 이 현안을 보도하는 일본 언론의 논조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 다음 기사는 ‘중주권’은 ‘공허한 명분’[空名]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제1기의 ‘중주권’ 담론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지협약(露支協約)에서는 외몽고의 외교권에 관해 어떤 규정도 없다. 외교권이 외몽고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나(支那)에 속할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지나(支那)는 오직 ‘중주권’이라는 ‘공허한 명분’[空名]을 안고 있을 뿐으로, (...) ³⁰

3.2 중국 언론의 용례

「전국보간색인」 DB에서 검색되거나 『근대중한관계사자료회편』에 수록된 문헌 중 ‘宗主權’을 언급한 최초의 것은 1905년 7월 12일(광서 31년 6월 10일) 『화자일보』(華字日報)에 실린 기사이다. 이 신문은 홍콩에서 발행한 *The China Mail* (1845년 창간)의 중국어판으로, 그 기사의 대부분은 외국 보도를 번역하거나 『경보』(京報)를 전재한 것이었다.

[도표] 6월 26일발 워싱턴발 미국 전보에 따르면 (...) 일본이 요구한 조항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충당할 만한 충분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 (2) 사할린(樺太)을 할양할 것, (3) 요동(遼東)의 조차권 및 동청철도(東清鐵道)를 모두 일본에 양도할 것, (4) 한국의 중주권(韓國

29 Alastair Lamb (1966), *The McMahon Line: A Study in the Relations between India, China and Tibet, 1904 to 1914*,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Vol. 2, pp. 493-566.

30 「露支協約調印」, 『東京朝日新聞』(1913. 11. 6.).

之宗主權), (5) 만주를 청나라에 돌려줄 것 등.

본래 '종주권'은 메이지 일본에서 만들어진 화제한어(和製漢語)였다. 이 기사는 포츠머스 회담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보도한 것으로, 앞에서 인용한 『도쿄 아사히』 1905년 8월 16일 자 기사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는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종주권'이 중국에 전파된 초기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 중국 언론은 러일전쟁 이후 한일관계의 달라진 양상을 주시하면서, 이를 해석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 '종주권'과 '종주국'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종주권' 개념을 전파한 주된 매체 중 하나는 『외교보』(外交報)였다. 『외교보』는 1902년 1월 상하이에서 창간된 중국 최초의 국제 문제 전문지로서, 장위안지(張元濟)가 주필을 맡고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옌푸(嚴復)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 저널은 국제정세·국제법·열강의 대중(對中) 정책을 주제로 한 외국 기사 및 논설을 발췌하여 수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종주권' 개념도 수입되었다. [표 3]은 『외교보』에서 '종주권'을 언급한 번역 기사의 목록이다.

중국 언론의 용례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제1기에는 현대적 유형의 '종주권'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시 일본 언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논종주국대대보호국지법리」(論宗主國對待保護國之法理)(1907)를 살펴보자. 이는 일본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가 『국제법잡지』(國際法雜誌) 제5권 제2호(1906. 10.)에 기고한 「『보호국론』을 저술한 이유」(保護國論を著したる理由)의 번역 기사이다.

보호국은 독립국인가 아니면 속국(屬國)인가? 『시사신보』 기사는 항상 한국에 대해 '종주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다. '宗主權'이란 종주국이 그 부용국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서, 보통 보호국이 그 피보호국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부용국

[표 3] '종주권'을 언급한 『외교보』의 번역 기사

일자	기사 제목	원문 출처 (일본)
1905. 3. 10. (光緒三十一年二月五日)	論日本經營韓國之失策	『太陽』(1904. 11.)
1907(일자 미상)	論宗主國對待保護國之法理	『國際法雜誌』(1906. 10)
1907. 5. 26. (光緒三十三年四月十五日)	各國略韓史	W. E. Griffis, <i>COREA: The Hermit Nation</i> (1882)
1907. 11. 20. (光緒三十三年十月十五日)	論韓國裁判制度	『東京日日新聞』(1907. 9. 10.)
1908. 3. 17. (光緒三十四年二月十五日)	論問島交涉	『外交時報』(1908. 1.)
1909. 11. 7. (宣統元年九月二十五日)	日韓新協約之詳情	『國際法雜誌』(1909. 9.)
1910. 2. 24. (宣統二年正月十五日)	日韓合併問題	『太陽』(1910. 1.)
1911. 1. 15. (宣統二年十二月十五日)	韓國三十年史	F. A. McKENZIE, <i>THE TRAGEDY OF KOREA</i> (1908)

(附庸國), 즉 속방(屬邦)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의 법령은 곧바로 조선에서 시행되면서, 일본과 각국 간 조약은 한국에 적용할 수 없는가?

『보호국론』은 제2차 한일협약 체결 후 대한제국 보호국화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리기가 유럽 열강의 보호국 사례와 그 법리를 정리하여 1906년 와세다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한 책이다. 이 글에서 아리가는 당시 언론에서 '종주권' 개념을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보호-피보호 관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말하자면 아리가는 전통적 유형의 '종주권' 의미를 고수하는 국제법학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현대적 유형으로 확장해 가는 현상을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다.³¹

31 이와 별개로 아리기가 'vassal state'의 번역어로 '부용국'(附庸國)을 제시하고, 그 의미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일병합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대한(對韓) 종주권' 담론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 언론에서는 이를 자국이 조선에 대해 가지는 고유한 권리의 의미로 전유(專有)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이 본래 우리 중화의 속방(屬邦)임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다. 중동전쟁[中東戰爭: 청일전쟁]의 결과, 비로소 '종주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독립했는데, 명목은 비록 아름다우나 그 정치상의 실권은 이미 점차 일본인의 손에 떨어졌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은 마침내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어 독립이라는 이름마저 사라지고 말았다.³²

중국이야말로 조선의 참된 '종주국'이라는 주장은 역사 논설에서 주로 제기됐다. 이러한 경향을 선도한 인물 중 하나는 청말·민국 초기의 혁명가 쑹자오런(宋教仁, 1882-1913)이었다. 그는 1911년 2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상하이 『민립보』(民立報)에 '어부(漁夫)라는 필명으로 연재한 「동아 최근 20년 시국론」(東亞最近二十年時局論)이라는 논설을 통해 중국이야말로 고대로부터 조선의 외교를 통제할 자격을 가진 유일한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텐진조약(天津條約, 1885. 4. 18.)의 체결을 일본과 그 '종주권'을 나눠 갖고 조선을 독립국의 반열에 들게 한 중대한 외교적 실책으로 통렬히 비판했다.³³

를 다시 '속방'(屬邦)과 동일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속방'이라는 같은 기표(記表, *signifiant*)를 통해, 그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의미를 달리하는 서양의 'vassal state'와 동아시아의 '조공국'이라는 기의(記意, *signifié*)가 뒤섞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속국'(屬國)의 의미에 관해서는 김봉진(2019), 「'조선=속국(屬國), 속방(屬邦)'의 개념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8권 19호, 동아시아의 전통적 '상국'(上國) 개념이 서구 국제법의 'suzerainty' 개념의 영향으로 변질된 경위에 관해선 이 동욱(2021)을 참조.

32 「哀韓國」, 『民呼日報』(1909. 11. 9.).

33 텐진조약의 체결을 조선을 둘러싼 청일관계의转机(轉機)이자 훗날 청일전쟁을 초래한

국제법 이론으로 논하면, 조선은 이미 남의 번속(藩屬)이 되었으므로 직접 타국과 입약수교(立約修交)할 자격이 없다. 설령 있더라도 반드시 그 '종주국'이 먼저 승낙해야 한다. (...) 이 조약[텐진조약-인용자] 이후로 일본인이 조선에 대해 획득한 용훼권(容喙權)이 마침내 공인을 받고 확정되어 중국과 대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종주권'을 나눠서 저들에게 주고, 또 중국이 스스로 국격을 낮춰서 그 '종주권'을 포기하여 조선을 독립국의 반열에 들게 한 것과 다름없었다.³⁴

비록 언론 기사는 아니지만, 백화문(白話文)으로 집필된 중국 최초의 통사(通史)인 뤼쓰만(呂思勉)의 『백화본국사』(白話本國史)(1923)는 역사학계에서 이뤄진 '종주권' 개념의 전파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³⁵ 본서의 제4편 「근세사(하)」의 제3장 「번속의 상실」(藩屬的喪失)에는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청조전사』(清朝全史)(1914)의 한 대목을 전재한 부분이 있다. 1874년 안남의 전권대신 레푸언(黎循)과 프랑스의 코친차이나 총독 뒤프레(Marie-Jules Dupré)가 제2차 사이공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청의 '종주권'(suzeraineté)의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장면인데, 이에 대해 이나바는 “안남 전권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종주권은 전성시대에 제왕의 위의(威儀)를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 병번(屏藩)이란, 중국 본부(本部)와 변

중대한 외교적 실착으로 보는 시각은 량치차오(梁啟超)의 『이홍장전(李鴻章傳)』(1901)에서 이미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종주권'이나 '종주국'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자오런이 20세기 이후 유행한 '종주권' 담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梁啟超 撰, 何卓恩 評注(2004), 『李鴻章』,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p. 105 참조.

34 宋教仁 撰, 陳旭麓 主編(1981), 『宋教仁集』(上), 北京: 中華書局, pp. 149-150.

35 『백화본국사』는 출간 이후 오랜 기간 대학교재와 학생 자습서로 활용되었으며, 1920년대와 30년대 중국 통사(通史) 중에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했다. 하지만 1931년 만주사변(9·18 사변) 이후 대일항쟁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남송 시대의 충신 악비(岳飛)에 대한 평가가 문제시되면서 1935년 난징 정부에 의해 금서로 지정됐다. 王萌(2015), 「呂思勉《白話本國史》查禁風波探析」,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7(2).

경이 직접적인 침융(侵融)을 면하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평했다.³⁶ 뒤쓰만은 이를 인용한 후 다시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

중국의 외번(外藩)에 대한 ‘종주권’의 실질과 의의가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여 단시일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속번(屬藩)의 상실로 인해 중국 변경이 직접 침융(侵融)을 받게 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조선의 상실은 관계가 더욱 중대하다. 이제 중국이 조선을 상실한 진상을 밝히려면, 조선 근세의 역사를 대략 알지 않으면 안 된다.³⁷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티베트 및 외몽골과 관련한 국제법·국제정치적 기사나 논설에서는 여전히 ‘종주권’이 전통적 유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1910년대 일본 언론에서 통용된 ‘종주권’의 의미는 대체로 전통적 유형에 해당했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조선·베트남에 관한 역사서술에서는 현대적 유형이, 그리고 티베트 및 몽골 문제에 관한 국제법·국제정치적 기사에서는 전통적 유형이 사용되는 자가당착적 양태를 보인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국제법학자 저우경성(周鯁生)의 「종주권론」(宗主權論)(1918)은 후자의 한 가지 예다.

국제사회에는 양국이 강국의 보호를 받고, 강국에 정치에 간섭할 권리를 주고서 조약으로 약정하니, 이를 ‘보호관계’라고 한다. 이 관계 아래에서 강국이 약국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가 보호권이 된다. 예를 들면 과거 일본의 조선에 대한 관계가 이것이니, 보호권이란 본디 타국의 주권을 할득(割得)한 권리이며, ‘종주권’은 고유한 주권을 삭탈당한 뒤의 잔여물임을 알 수

36 稲葉君山(1914), 『清朝全史』(下), 東京: 早稲田大學出版部, pp. 634-635. 君山(君山)은 이나마 이와키치의 호다. 단, 뒤쓰만은 단타오(但燾)가 번역하고 요한장(姚漢章)과 장상(張相)이 찬교(纂校)한 중화서국(中華書局) 번역본(1914)을 인용했다.

37 呂思勉(1923), 『白話本國史』, 上海: 商務印書館, pp. 759-760.

있다.

단, 이 글에 나타난 ‘보호권’과 ‘중주권’에 대한 이해는 순수하게 법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20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호권이란 본디 타국의 주권을 할득한 권리”라는 평가는 을사조약 체결 후 불과 5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의 운명에 대한 관찰로부터, “중주권은 고유한 주권을 식탈당한 뒤의 잔여물”이라는 인식은 티베트 및 몽골의 ‘중주권’을 둘러싼 외교적 분쟁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저자는 “보호권의 획득은 일국의 주권 팽창의 호기(好機)이며, 중주권의 승인은 일국 주권 상기(喪棄)의 명징(明徵)”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4. 청화학파와 역사 개념으로서의 ‘중주권’

4.1. 장팅푸와 제국주의

장팅푸는 20세기 초 중국 근대사 및 외교사 분야의 초석을 놓은 선구적 역사학자였으며, 또한 청화대가 해당 연구의 세계적 거점이자 신사학(新史學)의 요람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공헌한 탁월한 교육행정가로 평가된다.

장팅푸는 중국 후난성(湖南省) 바오칭(宝庆, 현재 邵阳) 출신으로 1911년 도미하여 미주리주의 파크 아카데미(Park Academy)와 오하이오주의 오벌린 칼리지(Oberlin College)를 거쳐 1923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컬럼비아 대학은 이른바 신사학(New History)의 중심이었다. 신사학이란 1910년대 초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역사 연구 경향으로, 그 특징은 정치·외교 중심의 전통적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경제·지리·문화·사회심리 등 인간 활동 전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역사학과 다른 학문과

의 학제적 접근을 강조한 데 있었다. 이러한 학풍을 선도한 제임스 로빈슨(James H. Robinson)이 컬럼비아에서 25년간 강의를 하였고, 장팅푸의 지도교수 칼튼 헤이즈(Carlton J. H. Hayes)가 그의 제자였으므로 장팅푸 또한 자연스럽게 그 학문적 세례를 받은 것이다.

1923년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장팅푸는 남개대학(南開大學)에서 2년간 초대 역사학과 주임으로 재직한 후, 2년 뒤인 1925년 칭화대학에 부임했다. 이곳에서도 역사학과 주임을 맡은 그는 미국에서 익힌 신사학의 이념에 따라 학과 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칭화대는 오래지 않아 중국 근대사 연구의 중심으로 국제적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³⁸ 그는 1935년 장제스의 요청으로 정계에 투신하여 국민당 행정원 정무처장, 중국 주재 유엔 상임대표, 타이완 주미대사 겸 유엔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1965년 10월 9일 뉴욕에서 사망했다.³⁹

그의 학문적 이력 가운데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그가 중국 학계에 이식(移植)한 근대 외교사학의 특징이다. 유럽에서도 외교사학 발전의 본격적 계기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 있었다. 즉, 신생 소비에트 공화국은 옛 차르 정부의 부패상과 신정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제1차 대전의 참전국들은 전쟁 책임론과 관련하여 외교서신(diplomatic correspondence)을 경쟁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기존에 일반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던 국가 문서고의 사료들이 대량으로 공개되자, 이에 기초한 외교사 연구 또한 급속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근대 외교사학의 중요한 특징이 도출되었는데, 그것은 비교적 최근의 사건, 특히 전쟁에 이르는 외

38 장팅푸가 칭화대 역사학과 주임을 맡은 후 시행한 학과 개편과 그 성과에 관해서는 刘超(2013) 및 曾维君·王素华(2016) 참조.

39 장팅푸의 생애와 학문에 관해서는 김정현(2017), 「蔣廷黻의 중국 근대외교사 연구와 1930-40년대 외교활동」, 『중국근현대사연구』 제73집; 김세호(2021), 「蔣廷黻 『中國近代史』(1938)의 체검토」, 『중국사연구』 제130집; 손성욱(2023a), 「20세기 전반 蔣廷黻의 외교사 연구와 '宗藩關係'론」, 『학림』 제51집.

교사를 주된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이었다.⁴⁰ 장팅푸가 옛 청조 문서의 발굴과 정리 작업에 정력적으로 임한 것 또한 이러한 국제학계의 풍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⁴¹ 이와 함께 그가 청 제국 멸망의 시발점이 된 청일전쟁(1894-1895)과 한반도를 둘러싼 청·일의 외교적 각축을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은 것 또한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에 대한 장팅푸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다. 이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Labor and Empire: a Study of the Reaction of British Labor, Mainly as Represented in Parliament to British Imperialism since 1880*”)에서도 드러나거니와, 그는 대학원 과정 중에도 윌리엄 셰퍼드(William R. Shepherd)의 〈유럽 발전사〉를 수강하면서 유럽 열강의 팽창 및 제국주의의 역사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홉슨(John A. Hobson)의 *Imperialism: A Study*(1902)를 읽고 제국주의에 관해 명확한 이해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동포 중국인들이 근대 내셔널리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지도교수인 칼튼 헤이즈의 *Essays on Nationalism*(1926)을 『족국주의논총』(族國主義論叢)(1928)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하기도 했다.⁴²

40 Saho Matsumoto, “Diplomatic History/ International Relations,” in Kelly Boyd (ed.) (1999), *Encyclopedia of Historians and Historical Writings*, London: Fitzroy Dearborn, pp. 314-315.

41 장팅푸는 1929년 가을부터 1931년 가을까지 2년에 걸쳐 고궁박물관에서 군기처(軍機處)의 외교문서를 필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籌辦夷務始末補遺』를 편찬했다. 그가 1931년에 발표한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上·中 2책)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청서(靑書) 등 일방적 문서에 의존하지 않고 편찬된 외교사 자료집”으로서 근대중국외교사 연구의 초석을 놓은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朱梅光(2008), 「蔣廷黻外交史科學理論與實踐」, 『船山學刊』 第1期; 朱梅光(2012), 『近代中國外交史學研究』, 合肥市: 黃山書社, 第3章.

42 다음은 『족국주의논총』(族國主義論叢)의 역사 소개글의 일부다. 장팅푸는 nationalism을 ‘족국주의’로 번역했는데, 헤이즈와 달리 내셔널리즘을 중국인의 ‘정치적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적 약’으로 높게 평가한 사실이 주목된다.

“헤이즈 교수는 족국주의(族國主義)에 대해 태도가 냉담하고 비판적이며 심지어는 반대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는 족국주의의 세력이 이미 너무도 커서 인류의 골수에까지 스며들었으니, 이를 폐기하고 대동주의(大同主義)를 높이 받드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큰

장팅푸가 제국주의에 대한 소신을 숨김없이 피력한 것은 1922년 발표한 「제국주의와 상식」(帝國主義與常識)에서였다.

모든 유능하고 진취적인 민족은 모두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 자기 세력의 팽창을 추구한다. 고대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다. (...) 이는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선악을 논할 것이 아니다. 만약 선악과 책임을 논하고자 한다면, 강자와 약자는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팽창이 외래의 팽창과 대항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외래의 팽창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어떤 민족의 팽창을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 그 생존을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이니,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기의 팽창을 구하지 않고 한갓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저 제국주의자를 매도하는 것은 자포자기이니, 오히려 더 남의 멸시와 압박을 초래할 뿐이다.⁴³

장팅푸는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을 막론하고 특정 민족의 대외적 팽창을 그 생명력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자 발전의 필연적 결과라고 믿었다. 그의 인식에서 제국주의는 선악의 윤리적 판단을 초월한 것으로,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민족은 결국 타자의 멸시와 압박을 받는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기 전부터 중국은 원래 광대한 영토와 여러 민족을 겸병한 대제국이었으므로, 그 질서의 복구는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으로 제시되었다. 제국은 중국 국가정체성의 핵

물결을 거슬러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가능한 것은 다만 족국주의의 편벽됨을 교정하고 국제주의를 촉진하는 것뿐이다. 나 개인의 태도는 헤이즈 교수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나는 비록 족국주의의 폐단을 잘 알지만, 중국인의 정치적 정신병은 오직 족국주의라는 정신적 약(藥)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海士(Hayes) 著, 蔣廷黻 譯(1930), 『族國主義論叢』, 上海: 新月書店, pp. 2-3.

43 『獨立評論』第71號(民國 22年 10月 8日); 蔣廷黻(1978), 『蔣廷黻選集』, 台北: 傳記文學出版社, 第3冊, pp. 415-421.

심이자 제국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내재적 역량의 증거였고, 그 지위를 회복하는 일은 민족적 생존의 필수적 과제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팅푸의 역사학은 한편으로 신사학의 학제적 접근 방식과 근대 외교사학의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으로서 중국의 지속성을 선형적으로 전제한 데서 오는 내적 긴장을 내포했다. 그 핵심은 한국·베트남 등 주변 소국에 대해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 '종주권'을 초역사적 실체로 정식화하려는 기획에 있었다. 이에 따라 장팅푸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당시 전통적 유형과 현대적 유형으로 분화된 '종주권'의 의미를 단일한 역사서술 안에서 재통합하려는 시도로 수렴되었다.

4.2 장팅푸의 '종주권' 이론

4.2.1. 「리홍장-30년 후의 평론」(李鴻章-三十年後的評論)(1931)

장팅푸의 논저에서 '종주권'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1931년에 발표한 「리홍장-30년 후의 평론」이었다. 그는 임오군란(1882) 직후 청이 진압군을 파병한 것을 근대 조청 관계의 중요한 전기(轉機)로 규정하면서, 1885년 말 총리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으로 조선에 부임한 위안스카이(袁世凱)의 강경책을 높이 평가했다. 즉, 거문도사건(1885-1887)을 계기로 일본·러시아·영국 등 열강이 청의 대조선 정책을 지지하는 유리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조선의 해관(海關)과 전신, 차관 도입, 외국인 고문의 고병, 공사 파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대외적 주권을 사실상 장악한 것이야말로 '종주권'의 '완전한 성과'라고 본 것이다.

결국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해관과 전신을 장악하였다. 조선이 외국에서 차관을 얻으려면 중국으로부터 빌려야 했으며,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중국

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서양 국가와 통상 사절을 교환함에 있어서도 중국이 정한 조건을 엄수해야만 했다. (...) 광서 20년에 이르러, 중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더 이상 과거처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형식적 '종주'(宗主)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완전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⁴⁴

장팅푸는 '종주권'을 중국이 고대부터 한국에 대해 본유(本有)한 권리로 간주했다. 그는 '종주권'을 기본적으로 현대적 유형의 의미로 해석한 후, 역사서술을 통해 전통적 유형의 의미까지 그에 접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의 역사서술에서 '종주권'은 초역사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로 재정의되었는데, 이에 따라 의례적인 '형식적 종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종주권'의 '완전한 성과'를 지향할 것인지는 오직 중국의 정책적 의지와 선호의 문제로 환원됐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면서도 장팅푸가 '종주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국제적 협조를 중시한 사실이다. 그는 텐진조약(1885) 직전 조선주재 독일 부영사 헤르만 부들러(Hermann Budler)가 열강의 공동 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중시했다.⁴⁵ 비록 이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장팅푸는 이를 큰 비용 없이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조선에 대한 우월한 지위의 국제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로 본 것이다. 장팅푸가 동시대 다른 중국사 연구자에 비해 독보적 위상을 차지한 이유 중 하나로 그의 근대적 관념[近代觀念]과 세계적 안목[世界眼光]이 지목되는데,⁴⁶ 여기서도 제국주의와 국제협조주의를 동시에 지향한 그의 독특한 면모가 드러난다.

44 蔣廷黻(1931), 「李鴻章-三十年後的評論」, 『政治學評論』創刊號, 北大政治學會出版, p. 9.

45 蔣廷黻(1931), p. 10. 부들러의 한반도 중립화론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1968), 『舊韓國外交文書 德案』,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제1권 pp. 49-50 참조.

46 朱梅光(2012), p. 118.

4.2.2. 「외교사와 외교사료」(外交史與外交史料)(1932)

장팅푸의 ‘중주권’ 이론은 이듬해 발표한 「외교사와 외교사료」에서⁴⁷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됐다. 이 글은 『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육십년래 중국과 일본』(六十年來中國與日本)(이하 『중국과 일본』)의 서평인데, ‘중주권’은 『중국과 일본』에 관한 비평에서 언급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텐진 『대공보』(大公報) 신문기자 왕윈성(王芸生)이 3년간 연재한 역사 칼럼을 편찬한 것으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일 관계에 관한 청 조정의 미간 문서뿐 아니라 당국자의 사문서까지 광범위하게 수록하여 출간 직후부터 양국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⁴⁸ 이 책은 역사서나 연구서가 아닌, 1차 문헌을 편찬한 자료집에 가깝다.⁴⁹ 그런데 19세기 청조의 공식 문서에서는 ‘중주권’, ‘중주국’이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8권 총 2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에서도 단 한 차례, 그것도 오직 왕윈성의 사평(史評)에서만 등장할 뿐이다.⁵⁰

47 蔣廷黻(1932), 「外交史與外交史料」, 『天津大公報文學副刊』, 第249期(民國 21年 10月 10日). 이 글은 蔣廷黻(1978) 第1冊, pp. 117-130에도 수록되어 있다.

48 『중국과 일본』은 1933년 나가노 이사오(長野勳), 하타노 겐이치(波多野乾一)의 번역으로 1933년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단, 민감한 정치적 내용을 배제한 탓에 제4권 1장까지만 번역되었다. 彭澤周(1982), 「書評: 『六十年來中國與日本』: その改訂と再版について」, 『大阪外国語大学學報』 55. 본서에 관한 상세한 해설로는 朱梅光(2012) 第7章 「王芸生與中日關係史研究」 참조.

49 장팅푸는 역사 편찬을 4개 유형[원사료의 편찬, 전문 연구서, 정통 사서, 사료의 역사(Documentary History)]로 구분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을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골조와 자재를 미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재료의 아름다움과 실질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건축물 전체의 절제미와 조화를 느끼게 하는 건축 양식에 비유했다. 蔣廷黻(1978), 第1冊, p. 120.

50 “리홍장과 이토는 3월 4일 3개조의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순수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했다. 이로써 중국은 조선의 ‘중주권’을 사실상 방기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중일 양국이 조선에 대해 동등한 파병권을 가지며, 파병에 앞서 상호 문서로 통지할 것을 명시했다. (…) 이것이 리홍장의 대일외교의 한 가지 중대한 착오다.” 王芸生(1932), 『六十年來中國與日本』, 天津: 大公報社, 第1卷, p. 255.

그런데도 장팅푸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점으로 대조선 '종주권' 정책에 관한 핵심 사료의 미비를 지적했다.

모리 아리노리가 중국에 왔을 때 총서와 리홍장은 여전히 전통 관념으로 새 국면에 대응했다. 이것이 고려 문제의 근원 중 하나로, 제3장의 서두에서 지적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당국도 우리나라의 고려 정책을 약간 변경해야 함을 깨달았다. (...) 편지는 제3장 제10절에서 이를 대단히 잘 서술했지만, 이후 리홍장이 어떻게 조선을 도와서 영·미 등 각국과 조약을 맺게 했는지, 그리고 조약을 맺을 때 리홍장이 어떻게 서양 열강이 중국의 '종주권'을 승인하도록 노력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일대 신정책이었다. 그 선택된 결론은 고려의 중립화이며, 그 중립은 국제 보장에 의한 것이어야 했다.⁵¹

이는 앞에서 살펴본 「리홍장-30년 후의 평론」(1931)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 그의 '종주권' 이론이 진일보한 점을 찾는다면, 대조선 종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이유를 해명한 것이었다. 장팅푸는 그 원인을 중국인의 전통적 관념에서 찾았다.

원래 중국의 '종주' 관념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번속(藩屬)에 대해 보호의 책임이 있었을 뿐, 그 밖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 번속은 우리나라에 대해 행해야 할 예절이 있었지만, 그 밖에 어떠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부담도 지지 않았다. (...) 하지만 광서 연간에 이르러

이 밖에 '종방'(宗邦)이 2차례(제1권 p. 1과 p. 270), '종속'(宗屬)이 3차례(제2권 p. 21과 p. 94; 제3권 p. 155) 사용되었는데, 모두 왕운생의 사평에 해당한다. '중국'(宗國), '종번'(宗藩)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종주'(宗主)는 1909년 일진회장 이용구가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올린 합방청원서의 인용문에서 1차례 등장한다(제5권, p. 358).

51 蔣廷黻(1978), 第1冊, p. 128.

사정이 달라졌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옛 ‘종주’ 관념이 당시 국제공법 및 국제관례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서 연간에 고려·안남(安南) 등의 나라가 미증유의 침략을 받은 것이다. ‘중국’(宗國)이 이러한 새 국면에 대처하는 데는 완전히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주’ 관념을 채택하거나 완전히 ‘종주권’을 포기하는 방법만 있었을 뿐, 결코 과거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⁵²

덧붙여 말하면, 장팅푸의 ‘종주권’ 이론이 당시 국제학계에서 보편적 인정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는 미국의 역사학자 페이슨 트리트(Payson J. Treat)와 장팅푸 간에 조청관계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알 수 있다.⁵³ 트리트는 ‘역사적 종주권’(historic suzerainty)과 ‘원세개가 강요한 종주권’(Yuan Shih-kai enforcing suzerainty)을 구분하고, 조선 근대사의 과국은 청국이 양자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장팅푸가 ‘역사적 종주권’에서 ‘강요된 종주권’으로의 전환을 ‘종주국’의 권능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반해, 트리트는 양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긴 것이다.

조선의 요청으로 청군이 파병되었고, 즉시 서울에 공사관 경비병을 유지할 조약상의 권리에 따라 일본 해병과 병력이 뒤따라 들어왔다. 일본은 이제 청나라가 주장하는 종주권, 즉 역사적인 종주권이 아닌 위안스카이가 강제한 그 종주권을 단번에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 개혁운동이 진압되고 한국이 부정과 무능의 나락으로 빠져든 것은, 주로 리홍장의 잘못된 정

52 蔣廷黻(1978), 第1册, p. 128.

53 T. F. Tsiang(1933),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1870-1894",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1. 트리트와 장정불 간의 논쟁에 관해선 손성욱(2023a), pp. 304-311; 尹媛萍(2017), 「中美学界关于甲午战争起因的早期争论-以蒋廷黻与魁特为例」, 『史学虫研究』第4期.

책과 그의 대표자 위안스카이의 전횡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⁵⁴

4.2.3. 『근대중국외교사자료집요』(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 (1934)

1934년 장팅푸는 『근대중국외교사자료집요』(이하 『집요』)를 출간했다.⁵⁵ 이 책은 고궁박물관 등에서 수집한 원문서를 집대성하여 편찬한 사료집으로, 상·하 두 책으로 구성된다. 상권은道光 2년(1822)부터 함풍 11년(1861)까지의 외교문서 259건, 중권은 함풍 11년부터 광서 21년(1895)까지의 외교문서 540건을 수록했다. 그리고 각 장에 「인론」(引論), 「배경 소개」(介紹背景), 「비평」(間加批評)을 덧붙여서 중국 근대외교사의 맥락을 정리하고 자신의 사관(史觀)을 피력했다.

『집요』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같은 편찬 방식을 취했다. 중국의 대조선 '종주권' 주장의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문제의식이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사료를 만들어낼 도리는 없었다. 이 자료집에서 '종주권' 또는 '종주국'이라는 용어는 중권의 제12장 「조선 문제」의 「인론」에만 보인다.

실상 이 충돌은 중국의 전통적 종번(宗藩) 관념과 근대 국제공법상 종속국 관념의 충돌이었다. 일본의 입장은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였고, 중국의 것은 부합하지 않았다. 조선 문제의 발단에서부터 우리는 전통에 얽매어 잘못을 범한 것이다.⁵⁶

중국은 역사를 초월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가진다는 선협적 전제

54 Payson J. Treat(1934), "China and Korea, 1885-1894,"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49, No. 4, pp. 542-543.

55 蔣廷黻 編(1931),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上, 上海: 商務印書館; 蔣廷黻 編(1934),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中, 上海: 商務印書館.

56 蔣廷黻 編(1934), pp. 364-366.

를 유지한 채, 오직 관념적 지체(遲滯)만이 문제였다는 시각은 여기서도 반복되었다. 장팅푸가 ‘중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다른 열강의 승인을 중시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서술했다. 그는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홍장이 어떻게 ‘중주권’을 공인받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제2절), 임오군란 직후 리홍장의 적극 정책과 장페이룬(張佩綸)과 덩청시우(鄧承修) 등 이른바 청류당(清流黨)의 강경론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제3절). 또한 갑신정변 직후 체결된 텐진조약은 청국이 그 ‘중주권’을 일본과 대등하게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명백한 승리이며(제4절), 1885년 거문도사건 이후 전개된 유리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여 사실상 ‘태상왕’(太上王)의 지위에 오른 것을 “중국의 ‘중주권’이 완전히 그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제5절).

그는 「외교사와 외교사료」에서 사료 편찬의 4대 원칙으로 ‘信’(신뢰성)·‘新’(참신성)·‘要’(중요성)·‘通’(체계성과 조리)을 제시하고, ‘信’의 의미를 부연하여 “모든 사료는 반드시 그 원래 모습을 보존해야 한다. 의도치 않은 교정상의 오류도 반드시 피해야 하며, 의도적인 삭개(刪改: 삭제와 개작)는 실로 사학계의 죄악이다.”라고까지 극언했다.⁵⁷ 하지만 그 자신은 중국의 지정학적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영속화하기 위해,⁵⁸ ‘중주권’이라는 현대적 개념을 동원하여 근대 한중관계사를 임의로 재단했다. 그가 원문서의 내용에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실재하지 않은 개념을 창조하면서까지 한중관계사를 도말(塗抹)한 것도 넓은 의미의 ‘삭개’에 해당할 것이다.

57 蔣廷黻 編(1932), p. 118.

58 「인론」의 첫 문장은 “중국의 번속 가운데 국방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이다.”(在中國的藩屬之中 從國防上看來 最要緊的是朝鮮)로 시작한다.

4.3. '종주권' 이론의 계승

4.3.1. 샤오순정(邵循正), 『중법월남관계시말』(中法越南關係始末)(1935)⁵⁹

장팅푸가 학계에서 활동한 것은 1923년부터 1935년까지 약 12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의 '종주권' 이론은 청화대에서 양성한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그 대표적 인물로 샤오순정과 왕신중을 꼽을 수 있다.

샤오순정은 장팅푸가 가장 아낀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장팅푸의 지도로 1935년 『중법월남관계시말』이라는 제목의 석사논문을 제출했다. 이 글은 《청화대학연구원 졸업논문 총간》 제1권으로 출간됨과 동시에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일약 그의 명성을 드높였다고 한다.⁶⁰ 그는 「서론」에서 중국의 대(對)월남 '종주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중월(中越)의 민족·문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연원은 멀리 진·한(秦漢)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으로부터 송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은 모두 중국의 군현(郡縣)이었다. 그 뒤 중국으로부터 이탈해 자립하기는 했으나, 이후에도 대대로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아 속국(屬國)이 되었다. (...) 프랑스가 퉁킹(北圻)에 욕심을 가지자, 곧바로 먼저 중월 간의 종번관계(宗藩關係)를 깨뜨리고자 했다. 프랑스 측 논자는 이구동성으로 월남에서의 중국의 '종주권'을 배척하여 유명무실한 것으로 몰아갔다. (...) 그러나 중월 간 종번관계는 그 역사적 근거가 충분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 법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월남의 영토에 대해 절대권(絕對權)을 가지며, 오직 그 소유권(所有權)만을 월남 왕에게 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월남의 지위는 엄격히 말하면 몽골의 번부(藩部)와 거의 같다.⁶¹

59 邵循正(1935), 『中法越南關係始末』, 北平: 國立清華大學研究院畢業論文叢刊.

60 刘超(2013).

61 邵循正(1935), pp. 37-38.

이는 장팅푸의 대조선 ‘종주권’ 이론을 베트남에 적용한 것에 가깝다. 다만 역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범리상으로도 ‘종주권’의 정당성을 구하려고 시도한 점에서는 장팅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측면도 없지 않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인용문에서 제시된 ‘종주권’의 의미는 현대적 유형이다. 그런데 이 논문 자체는 전형적인 외교사 논문으로, 일반적으로 황서(黃書: *Livre Jaune*)라고 부르는 프랑스 외교부의 공식 외교문서집에 수록된 주요 문서를 충실히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⁶² 시기적으로는 청불전쟁(1884-1885) 직후 체결된 파리조약(1885. 6. 9.)까지를 다루었는데, 이때는 아직 청국에 현대적 유형의 ‘종주권’ 개념이 존재하기 전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에 대해 청국이 주장하는 전통적 권위를 *suzeraineté*라고 부르며, 허구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종주권’은 전적으로 19세기 프랑스 외교문서를 번역한 문장에서만 등장하며, 그 의미는 예외 없이 전통적 유형에 해당했다. 하지만 샤오순정은 「서론」에서 제시한 ‘宗主權’과 본문에서 인용한 ‘宗主權’ 의미 간의 차이와 모순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시도하지 않았다.

4.3.2. 왕신중(王信忠), 『중일 갑오전쟁의 외교 배경』(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1937)⁶³

장팅푸의 ‘종주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바탕으로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서술을 시도한 것은 왕신중의 『중일 갑오전쟁의 외교 배경』이라는 논문이었다. 이 글은 1935년 청화대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되었고, 2년 후 《청화대학연구원 졸업논문 총간》 제2권으로 출간됐다.

62 주로 인용한 것은 다음의 문서집이다. Franc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1883), *Livre Jaune: Affaires du Tonkin et de l'Annam. Documents diplomatiques*, Vol. I, Paris: Imprimerie Nationale.

63 王信忠(1937),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北平: 國立清華大學.

[표 4] 『중일 갑오전쟁의 외교 배경』에 나타난 '종주'의 합성어

	宗主地位	宗主權利, 宗主國權利	宗主體面	宗主責任, 宗主之責, 宗主國責任, 宗主國之責	宗主權	宗主國	宗主	총
빈도	27	6	2	7	10	9	3	64

왕신중은 이 논문이 스승 장팅푸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작성된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서언」(序言)에서는 “이 원고를 완성하는 데 장팅푸 선생과 첸따오쑤(錢稻孫) 선생의 지도를 깊이 받았다. 장 선생님은 필자의 지도교수로서, 사료의 수집과 감별, 사실(史實)의 서술과 해석, 정책의 변화와 정세의 추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상세한 지도와 교정을 해주셨으며, (...)”라고 밝히고, 부록의 「참고서목」(參攷書目)에서는 장팅푸의 『중국외교사자료집요』 옆에 “이 책은 스승 장정불이 편집한 것으로, (...) 본문에서 사용한 것은 청화대 강의본(講義本)이다.”라는 부기(付記)까지 덧붙였다.⁶⁴

284쪽 분량인 왕신중의 논문에는 ‘종주’라는 단어가 무려 60차례 이상 등장한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비단 ‘종주권’이나 ‘종주국’ 등의 익숙한 형태가 아니라, ‘종주지위’(宗主地位), ‘종주권리’(宗主權利), ‘종주책임’(宗主責任)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는 장팅푸나 샤오원정의 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었다. [표 4]는 이 논문에 등장한 ‘종주’의 합성어와 그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전통적 유형과 현대적 유형을 불문하고, 근대 서구 국제법에서 ‘종주국(suzerain state)’은 ‘종주권’, 즉 하위국가의 주권 일부를 상위에서 통제하는 국가를 뜻했다. 다시 말해서, ‘종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때문에 ‘종주국’이라는 권위(title)를 가진 것이지, ‘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법적 자격이나 국제적 지위가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해는 위안스

— www.kci.go.kr

64 王信忠(1937), p. 285.

카이의 내정간섭을 ‘종주권’의 ‘완전한 성과’로 평가한 장팅푸에게서도 보인다.

하지만 왕신중은 이와 반대로 조선에 대해 중국이 가지는 초역사적이며 절대적인 지위를 ‘종주’로 선협적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지위(‘宗主地位’), 권리(‘宗主責任’), 체면(‘宗主體面’), 책임(‘宗主責任’) 등을 연역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이로써 ‘종주권’은 조선에 대해 ‘종주’, 즉 일족의 적장자 노릇을 하는 중국이 보유한 고유한 권능의 의미로 재정의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역사적 한중관계가 유사(類似) 가족관계로 새로 해석되면서, 중국의 가부장적 책임과 함께 그 자제(子弟)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발적이며 공순(恭順)한 복종이 역사 담론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전근대 동아시아사의 핵심 술어이자 역사학 개념인 ‘종주권’의 기원을 1920-30년대 장팅푸를 중심으로 한 중국 청화학파의 외교사 연구에서 찾았다. ‘종주권’ 그리고 ‘종주국’은 동아시아 3국의 역사학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용어지만, 19세기 이전까지 어떤 공문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러일전쟁 전후 일본 언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 의미는 다의적이고 모호하며 또 자의적이었으나, 여기서는 이를 전통적 유형과 현대적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 20세기 전반 일본과 중국 언론에서의 의미 변화를 분석했다.

‘종주권’은 국가 간, 그리고 그 주권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권국가 간 평등이라는 국제법적 허구보다는 국제정치적 리얼리즘에 기초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체가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는 그 주권 일부의 양여(讓與)라기보다는, 그 주권 자체를 상위에서 통제하는 우월한 지위의 획득을 의미했다. 따라서 1910

년 대한제국의 주권이 완전히 소멸하자 일본 언론에선 대한(對韓) '종주권' 담론이 사라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역사적 '종주권'을 운위하기 시작했다.

1920-30년대 중국 언론에서 '종주권'의 의미는 정립되지 않은 채 다소 혼란스럽게 통용되고 있었다. 한국·베트남 등 상실한 조공국에 대한 역사 논설에서는 현대적 유형의 '종주권'으로, 티베트·몽골 등 자국의 영토 주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정치·국제법 논설에서는 전통적 유형의 '종주권'으로 사용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장팅푸와 청화학파의 역사학은 이 분열된 의미를 통합하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다. 그 방식은 현대적 유형의 의미를 수용하되, 역사적 논거를 동원하여 이를 초역사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제국주의 국제질서의 현실을 반영한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팅푸 본인이 사료 편찬의 원칙으로 강조한 '信(신뢰성)'의 원칙에서는 벗어난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은 20세기 초 국제정치의 산물인 '宗主權' 개념을 역사서술에 도입함으로써, 한·중 간 위계 구조를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세기 동아시아의 '종주국' 개념은 하위국가—부용국(附庸國)·속국(屬國)·속방(屬邦)·피보호국(被保護國)·위성국가(衛星國家) 등 어떤 명칭이든—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순차적인 '종주권' 주장은, 국가 간 관계를 가조적 위계로 인식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국제질서관(國際秩序觀)과 함께 그에 대한 두 제국의 뿌리 깊은 비하 의식을 드러낸다.

참고문헌

자료

㉠ 한국어문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1968), 『舊韓國外交文書 德案』1,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기타 동양문헌

蔣廷黻(1978), 『蔣廷黻選集』(6冊),台北: 傳記文學出版社.

_____編(1934),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中, 上海: 商務印書館.

_____ (1932), 「外交史與外交史料」, 『天津大公報文學副刊』第249期.

_____編(1931),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上, 上海: 商務印書館.

_____ (1931), 「李鴻章-三十年後的評論」, 『政治學評論』創刊號.

海士(Hayes)著, 蔣廷黻譯(1930), 『族國主義論叢』, 上海: 新月書店.

稻葉君山(1914), 『清朝全史』,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梁啟超撰, 何卓恩評注(2004), 『李鴻章』,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呂思勉(1923), 『白話本國史』, 上海: 商務印書館.

邵循正(1935), 中法越南關係始末, 北平: 國立清華大學研究院畢業論文叢刊.

宋教仁撰, 陳旭麓主編(1981), 『宋教仁集』, 北京: 中華書局.

王信忠(1937),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北平: 國立清華大學.

日本外務省編(1936-1957), 『日本外交文書』, 東京: 外務省.

田保橋潔(1930), 『近代日支關係の研究-天津條約より日支開戰に至る』,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研究調查冊子 第3輯, 京城: 京城帝國大學.

胡春惠·趙中孚·張存武編(1987),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7冊), 台北: 國史館.

㉢ 서양문헌

Boyd, Kelly (Ed.) (1999), *Encyclopedia of Historians and Historical Writings*, London: Fitzroy Dearborn.

Encyclopaedia Britannica (1910-1911), 11th ed., Hugh Chisholm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nc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1883), *Livre Jaune: Affaires du Tonkin et de l'Annam. Documents diplomatiques*, Vol. I, Paris: Imprimerie Nationale.

Great Britain, Parliament (1899), *The Parliamentary Debates* (authorised edition) Fourth Series, Vol. LXXVII, London: Wyman and Sons.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1904), *Papers Relating to Tibet, Presented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Cd. 1920*, London: HMSO.

MacMurray, John V. A. (Ed.) (1921), *Treaties and agreements with and China, 1894-1919*, New York: Oxford Univ. Press.

Tsiang, T. F. (1933),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1870-1894",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1.

논저

㉠ 한국어문헌

김봉진(2019), 「'조선=속국(屬國), 속방(屬邦)'의 개념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8권 19호.

김세호(2021), 「蔣廷黻『中國近代史』(1938)의 재검토」, 『중국사연구』 제130집.

김정현(2017), 「蔣廷黻의 중국 근대외교사 연구와 1930-40년대 외교활동」, 『중국근현대사연구』 제73집.

김종학(2024), 「근대 일본에서의 '종주권' 개념의 발명: 1880년대 후반 조청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개념적 전유」, 『개념과 소통』 제34호.

_____ (2023), 「'宗主權'이라는 말의 국제정치적 기원에 관하여: 1890년대 말 일본에서의 번역 경위와 동아시아로의 전파」, 『국제정치논총』 제63집 4호.

다보하시 기요시 저, 김종학 역(2013),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상), 서울: 일조각.

배경환(2000), 「19세기말 20세기초 중화체제의 위기와 중국 민족주의: 티베트·몽골의 독립요구와 중국의 대응」, 『역사비평』 제51호.

손성욱(2023a), 「20세기 전반 蔣廷黻의 외교사 연구와 '宗藩關係'론」, 『학림』 제51집.

_____ (2023b), 「20세기 '중번관계'론의 형성과 변용」, 『동양사학연구』 제164호.

유바다(2017),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의 발발과 조선의 속국(屬國) 지위 청산」, 『대동문화연구』 제98호.

_____ (2016a),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8호.

_____ (2016b), 「조약·장정의 체결과 속국(屬國)·반주지국(半主之國)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역사와 현실』 제99호.

이동욱(2021), 「1880-1890년대 동서양 종주권 개념의 변용과 착종: 영국과 청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57집.

_____ (2019a),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사총』 제96호.

_____ (2019b), 「1880-1890년대 동서양 종주권 개념의 변용과 착종: 영국과 청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157호.

曾天富(2021), 「대만의 한국학 연구 상황과 미래 전망」, 『한국학연구』 제61집.

㉡ 기타 동양문헌

岡本隆司(2016), 『中国の誕生-東アジアの近代外交と国家形成』,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_____(2014), 「宗主權と國際法と翻譯 - 「東方問題」から「朝鮮問題」へ」, 『宗主權の世界史 - 東西アジアの近代と翻譯概念』(岡本隆司 編),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刘超(2013), 「清华学人与中国近代史研究-从罗家伦、蒋廷黻到郭廷以、邵循正、费正清」, 『江蘇社會科學』第4期.
- 王萌(2015), 「吕思勉《白话本国史》查禁风波探析」,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47(2).
- 尹媛萍(2017), 「中美学界关于甲午战争起因的早期争论-以蒋廷黻与魁特为例」, 『史学虫研究』第4期.
- 朱梅光(2012), 『近代中国外交史学研究』, 合肥市: 黄山书社.
- _____(2008), 「蒋廷黻外交史料学理论与实践」, 『船山学刊』第1期.
- 朱傳譽(1979), 『蒋廷黻傳記資料』, 台北: 天一出版社.
- 曾维君·王素华(2016), “蒋廷黻对清华大学历史系专业改革之贡献”, 『邵阳学院学报』第1期.
- 坂野正高(1973),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 彭澤周(1982), 「書評: 『六十年來中國與日本』: その改訂と再版について」, 『大阪外国語大学学報』55.
- 馮明珠(1996), 『近代中英西藏交涉與川藏邊情-從廓爾喀之役到華盛頓會議』,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 豊田哲也(2018), “國際法における保護關係(protectorate)概念の形成と展開”, 『ノモス』43.

㊦ 서양문헌

- Garner, James W. (1928), *Political Science and Govern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 Lamb, Alastair (1966), *The McMahon Line: A Study in the Relations between India, China and Tibet, 1904 to 1914*,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artens, F. F. (1883-1887),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traduit du russe par Alfred Léo Sabatier*, 3 vols., Paris: Chevalier-Marescq et Cie.
- Westlake, John (1914), *Collected Paper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L. Oppenheim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u, Yuan Yi (2020), “Suzerainty, Semi-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egal Hierarchies on China’s Borderlands,”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No. 10.

원고 접수일: 2025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7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8월 19일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宗主權” (Suzerainty)
in Modern East Asian
Historiography

Kim, Jong-Hak*

Focusing on the Diplomatic History
Studies of the Tsinghua School in
Early 20th-Century China

This article traces the origin of the key historical concept and historiographical term ‘宗主權’(suzerainty) in premodern East Asian history to the diplomatic history studies of the Tsinghua School, led by Tsiang Tingfu (蔣廷黻, 1895–1965) in the 1920s and 1930s. Although ‘宗主權’ had long been widely used in the historiography of China, Japan, and Korea, it was in fact a modern construct that first gained popular currency through the Japanese press around the time of the Russo-Japanese War.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meanings of ‘宗主權’ in early twentieth-century Chinese and Japanese newspapers by distinguishing between its “traditional” and “modern” usages. As a concept premised on inequality between states and their sovereignty, ‘宗主權’ disappeared from Japanese discourse onc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overeignty of the Korean Empire was completely extinguished in 1910, only to reemerge in Chinese newspapers as a claim to historical suzerainty over Korea.

The historiography of Tsiang Tingfu and the Tsinghua School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reconcile these two divergent usages of ‘宗主權’: they adopted the modern sense of the term but reinterpreted it as a transhistorical and absolute right through historical arguments. Yet this move not only deviated from Jiang’s own principle of “reliability” in source compilation but also had the effect of perpetuating a hierarchical order between China and Korea by importing into historiography a concept that was in fact a product of early twentieth-century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modern East Asian notion of ‘宗主權’ was predicated on the existence of subordinate states, Japan’s and China’s successive claims to suzerainty over Korea reveal not only the persistence of a characteristically East Asian vision of international order as a familial hierarchy but also the deeply rooted sense of superiority and disparagement held by the two empires.

Keywords Tsiang Tingfu, Tsinghua School, Suzerainty (zongzhuquan), Suzerain State (zongzhuguo), Diplomatic History